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구매(리스) 사업”(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 인공지능센터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2.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제안요청서(제안서 포함)에 맞게 설치하고 검수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3. “정상가동”이라 함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 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하자”라 함은 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용환경과 유사한 환경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6.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 ① 육군 인공지능센터장은 국군중앙(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육군 인공지능센터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 ① 다음 각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입찰 공고문
 4. 입찰 유의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7. 사업수행계획서
 8.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 ⑤ 기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호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호의 문서가 우선한다.
-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관리)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 조직 및 임무,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 투입 계획, 품질/위험/이슈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착수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 ② 수요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는 본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공급자가 제1항의 기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일정복구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본 계약이행 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휴무일 경우 그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단위 사업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요자가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 ⑥ 공급자는 본 계약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그 사유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⑦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 ① 공급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에 소속된 자 중 공급자 소속으로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GPU 서버 구매 사업관리자(PM) 경력자를 사업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투입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한다
-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제2항의 문서와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투입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교체사유서, 교체 투입인력의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의 교체 승인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투입인력은 본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동안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때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기일로부터 15근무일 전까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검사 요청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를 위해 수요자 또는 수요자의 납품받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른 규격,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보완을 완료하고 수요자 또는 제1항의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납품 및 설치)

-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장비를 직접 납품 ·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납품기일 이전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납품 예정일시를 2근무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납품기일의 시한은 납품받는 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08:30 ~ 17:00)로 한다.
- ③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되는 장비가 계약체결연도(' 26년) 생산된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납품 · 설치되는 모든 장비가 기존 운용환경과 호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⑤ 공급자는 납품되는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⑥ 공급자는 납품하는 장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납품하는 각 부대의 관리자에게 납품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⑦ 장비의 납품 ·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새로 설치된 장비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설치 자재를 철거한 후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사업수행결과, 납품·설치 확인서, 각종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절차에 입회·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납품된 물품을 검수·인수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⑧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⑨ 공급자의 납품 및 설치 의무는 본 조에 따른 검수에 합격한 장비를 수요자가 인수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제11조(수요자의 협조 의무)

공급자와 공급자의 하수급인이 본 계약이행을 위해 수요자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열람 등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요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정계약의 체결)

- ①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물량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급자가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문서상 단순 표기 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 ①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반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③ 공급자가 계약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미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절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는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공급자가 본 계약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직 · 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해당 하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 ⑤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관련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 ⑥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 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날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대금 지급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대금지급 및 지급)

- ①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리스계약방식에 의하며, 본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하여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면 리스계약업체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계약업체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대금 청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③ 공급자가 제1항의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를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이 승인된 후 공급자는 변경된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가 제3항에 따른 계좌변경을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리스계약업체가 변경 전 계좌로 입금한 경우, 리스계약업체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리스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리스계약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따른 별도 리스계약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6조(부당이득금의 등의 환수)

- ① 공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이로 인하여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수요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 ② 수요자가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 관련 제반 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공급자가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수요자의 교체요구에 불응한 경우
 - 2. 공급자가 수요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하도급을 준 경우
 - 3. 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정·보완조치 요구에 불응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4. 공급자 측 관계자가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등 제반 보안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보안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공급자가 안전·보건 확보조치 준수 의무 또는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 및 제27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8.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 및 제3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은 수요자가 공급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체상금)

-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천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19조(하자보수)

-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사유로 본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 ④ 수요자는 계약목적물인 장비를 사용하면서 장애(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공급자는 신고받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기간 중 동일한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품목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⑥ 공급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예비부품을 전체 계약목적물 부품 수량 대비 5% 이상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부품의 단가, 수량, 보관장소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세워야 하며, 예비부품의 포장에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구매(리스) 사업」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⑦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수요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계약체결 지연 시 수요자의 요청에 의거 정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상용정보통신장비 용역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공급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해당 물품의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유지보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품(CPU, RAM, SSD, GPU, Power Supply 등)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

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육군 인공지능센터 사업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수지원계획서는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정비대체장비 포함)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21조(품질보증)

- ① 공급자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0조에서 제134조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계획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4조(보안사항)

-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및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최소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및 관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④ 공급자측 관계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 ⑤ 공급자 및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해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위해 반입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는 제6항에 의해 반입된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는 본 계약 종료 후 수요자의 반출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에 사용된 HDD,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는 수요자가 ‘완전소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제한 시 물리적파기) 후에만 공급자가 반출할 수 있다.
- ⑧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⑨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는 행위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 ⑩ 공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3장 제1절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군사 I, II, III급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⑪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⑫ 공급자는 군사관련사항 등을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사업 종료일까지 “업체에서 군사관련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⑬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정기휴가, 사직 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해외여행 포함)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⑭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하수급인 측 근로자의 본 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⑮ 공급자는 납품되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포함) 내에 기능상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식별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⑯ 본 조에 의한 기밀 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25조(전속적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6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조물 책임)

-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 ① 공급자는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같은 훈령 별지 제23호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이는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 ③ 공급자가 제2항의 확인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접·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전시 사업관리)

-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2조, 26조, 27조를 따른다.